

**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예고**

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영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

영동군의회(조례심사특별위원회)

- 전 화 : 043)740-3033, FAX : (043)740-3039

1. 조 례 명 :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‘22.1.13. 시행)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명권이 부여되고,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소속과 직무범위에 대해 정함

3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조문 수정 (안 제1조)
- 정책지원관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의2)

4. 의견제출

-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21년 12월 24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영동군조례 제 호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-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- 의견 제출자 주소 :
-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0조 제2항 및 제91조 제1항”을 “제41조, 제102조 및 제103조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둔다.

제4조제1항 중 “특별위원회(다음부터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”를 “위원회의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-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조례안 내용	의견(찬.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
4.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
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 수행의 제한을 받는다.

1.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

2.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하여 의원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

제5조 중 “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를 “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”로 한다.

부 칙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제2항 및 제91조 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영동군의회(다음부터 “의회”라 한다) 사무과의 설치, 사무직원의 정원과 업무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 제41조, 제102조 및 제10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2조(사무과의 설치) ①(생략) ② 사무과는 의회 운영 및 입법 활동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.	제2조(사무과의 설치) ①(현행과 같음)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제3조(사무과장)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. ② (생략)	제3조(사무과장)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을 둔다. 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전문위원) ① 특별위원회(다음부터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. ②·③ (생략) <신 설>	제4조(전문위원) ① 위원회----- ----- ----- -----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4조의2(정책지원관) ① 의원의

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,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
2.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3.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
4.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
5. 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
6. 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·분석·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

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

<p>제5조(사무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「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」로 정한다.</p>	<p>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p> <p>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 수행의 제한을 받는다.</p> <p>1.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</p> <p>2.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하여 의원의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</p> <p>제5조(사무직원의 정원) -----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-----</p>
---	---